

9월 2, 15 日



日 정신대고소장 거부 유엔인권추세 고발

정대협 제네바에 대표파견 오늘 “전범처벌” 주장키로



일본 검찰로부터 고소고발장 접수를 거부당한후 가두시위를 벌이는 정신대 피해 할머니들.

인 연대활동을 계속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전후 최초로 일본의 정신대 책임자를 형사 고소고발하는 이번 한국의 정신대피해 할머니들의 활동에 힘입어 현재 필리핀등이 고소고발을 제기할 움직임이다.

이외에 정대협은 현재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인권위원회 본회의에서 일본의 고소고발장 거부를 폭로하고 각국의 지지를 호소할 방침이다.

이번 회의에서 「정신대문제 토론회의 날」로 정해진 14일(한국날짜로 15일)에 한국대표로 참석하고 있는 정대협의 申惠秀국제협력위원장이 이번 고소장 반려경위와 일본 전범처벌을 요구하는 발언을 할 예정이다.

2차대전당시 정신대를 강제 동원했던 일본정부의 책임자들을 「전쟁범죄자」로 법정에 세우려했던 한국정신대할머니들의 뜻은 일본 검찰에 의해 거절됐다.

지난 7일 정신대피해할머니 27인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등은 동경지방검찰청에 2차대전당시 정신대를 강제동원했던 책임자들을 「전쟁범죄 및 인도에 대한 죄」를 물어 고소, 고발하려했지만 일본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본검찰의 고소고발장 접수 거부사유는 일본 국내법에 따르면 공소시효를 이미 넘겼다는 점과 가해자인 피고소고발인이 지정되지 않았다는 것, 또 일본법에 이를 처벌할 법조문이 분명치 않다는 것등이다.

이에 대해 이번 고소고발단의 자문변호사로 동행한朴元淳 변호사는 「소매치기를 당한 사람의 경우는 범법자의 신원을 모르더라도 고소장을 접수해주는 일본검찰이 피고소인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접수를 거부한 것은 이해할수 없는 처사」라며 「지금껏 정신대할머니들이 증언한 사실과 일본정부가 보관하고 있는 문서를 조금

만 들여보아도 당시 군 부대의 책임자 정도는 쉽게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까지 독일등지에서 나치전범이 법정에 서는 예로도 알 수 있듯이 국제법인 「전쟁범죄」에 관한 처벌조항은 국내법의 공소시효기간을 초월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정대협의 李美卿총무는 「이번 고소고발장 반려에 굴하지 않고 정신대문제를 전쟁범죄로 처벌할 수있도록 국제적